

성적 괴롭힘의 구성 차원에 관한 연구

김 현 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우리 나라에서 최근 직장내 성적 괴롭힘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지만,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심리학적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는 공통적으로 수용되는 성적 괴롭힘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성적 괴롭힘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심리학적 연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무엇이 성적 괴롭힘이나?'와 관련해 남성과 여성이 합의를 이루는 성적 괴롭힘의 구성 요인을 밝혀 내고자 성적 괴롭힘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의 대기업 일반 사무직에 근무하는 남성 485명과 여성 165명, 총 650명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에 대해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과 교차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성적 괴롭힘의 구성차원은, 언어형 성적 괴롭힘, 관계 요구형 성적 괴롭힘, 그리고 신체 / 환경형 성적 괴롭힘이다.

우리 나라에서 그 동안 성적 괴롭힘의 문제는 현상은 존재하되 적절한 이름을 가지지 못한 채, 남성들 뿐 아니라 때로는 여성들에게조차도 개인의 직업 발달 (career development)에 위협적인 요소로 인식되지 못하고 간과되어 오거나 혹은 사생활의 문제로 축소되어 왔다. 그러던 중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이 법정 소송으로 제기된 것은 이 문제가 "숨겨진 이야기"에서 일반인들의 논쟁 거리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이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직장에서는 어떤 류의 농담이 허용될까?", "같은 직장의 여성에게 어느 정도까지 친밀감을 표시할 수 있는가?" 등과 같이 어떤 행동이 성적 괴롭힘이 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논의들은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매스컴을 통해 알려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진지한 접근으로 이어

지지 못하고 일시적인 관심에 그친 경향이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 이러한 일반인들이 가지는 질문들을 사회과학적 틀 내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학문적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학, 여성학, 그리고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일부 논의가 있었는데(심영희, 1989; 조정아, 조혜순, 1991; 신성자, 1993), 이러한 연구에서는 피해 여성에게 초점을 두고 이 문제를 성폭력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거나 여성과 남성의 성대결의 문제로 다루고 있어서, 이 행동을 정상적인 행동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려는 일반인의 담론에 대해 학문적 이해의 틀을 제공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 과학의 일각에서 시도된 성적 괴롭힘에 대한 이러한 연구가 일반인의 담론을 담아내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성적 괴롭힘의 개념 정의 문제와 관련된다. 성적 괴롭힘은 남성들이 사소한 장난으로 간주하는 짓궂은 농담으로부터 직장 여성들의 복지를 위협할 만큼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는 성적 행동의 요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현상의 복잡성과 독특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시도된 일부 연구들은 이러한 넓은 범위의 행동 중 일부만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합의를 이루는 성적 괴롭힘의 구성 차원을 밝히는 작업은 성적 괴롭힘 현상의 연구에 있어서 우선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적 괴롭힘이라고 지각되는 부분에 대한 일반인들의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성적 괴롭힘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경험적으로 타당하게 지지되는 성적 괴롭힘의 구성 차원과 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의 경험적 연구에 들어가기 앞서, 성적 괴롭힘의 구성 요인에 관한 외국의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그 구성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의 틀을 마련하고, 이러한 개념을 잘 측정해 내기 위한 방법론적인 측면에 대해 고찰하겠다.

1. 성적 괴롭힘의 구성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

사회과학 분야에서 성적 괴롭힘의 개념적 영역을 밝히고 포괄적인 분류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는 Till(1980)에 의해 시도되었다. 그는 대규모 여대생 표본의 자기 기술적 보고에 기초하여, 성차별주의적인 언사나 행동과 관련된 성별 괴롭힘(gender harassment), 유혹하는 행동(seductive behavior), 보상의 약속과 관련된 성적 뇌물(sexual bribery), 처벌의 위협과 관련된 성적 강제(sexual coercion), 그리고, 성폭행(sexual imposition or assault)의 5가지 성적 괴롭힘 영역을 제안했다. Till의 유목은 대략 (심각성 차원에서) 위계적인 연속체로 정리되었지만, 상호 배타적인 분류가 아니며 보다 적은 수의 하위 요인으로 묶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출판된 연구들 가운데 다양한 직업과 조직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대표성이 문제되지 않는 성적 괴롭힘 연구 17개를 검토한 Gruber(1992)에 따르면, 첫째, 유사한 괴롭힘 경험이 다른 명칭으로 표시되어 있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제시된 유목들이 상호 배타적이지도 완전하지도 못하다. 둘째, 일부 연구는 너무 적은 유목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유목 아래 너무 많은 정보를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많은 연구들이 성적 괴롭힘의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해당 유목을 빠뜨리고 있다. 예를 들어 17개 중 4개 연구만이 성적 뇌물을 유목에 포함시켰고, 작업환경형 괴롭힘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는 전혀 없었다.

이에 Gruber는 성적 괴롭힘 피해자의 경험담, 성적 괴롭힘의 판결문이나 법적 결정에 대한 해석, 그리고 평등고용기구(EEOC)에 의한 분류와 같은 4가지 종류의 자료를 내용 분석하여 11개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구성된 체계를 제안했다. 이 분류체계는 크게 언어적 요구(verbal requests), 언어적 언급(verbal remarks), 비언어적 표현 (nonverbal displays)으로 나뉘어지고 각 형태가 11개의 하위 유목을 포함하도록 조직되었으며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기술하였다. 먼저, 언어적 요구는 성적 협조를 주도하고 공고히 하는 모든 시도를 포함하는데, 성적 뇌물, 성적 접근, 관계적 접근, 그리고 은근한

표 1 성적 괴롭힘의 하위 유목

Fitzgerald 등	성별 괴롭힘	원치 않는 성적주목	성적 강제
Gruber	성적 언사/ 언급 개인적 언사 대상의 사물화 성유목적 언사 비언어적 전시 성적 자세 성적 자료	언어적 요구 성적 접근 관계적 접근 은근한 요구/압력 비언어적 요구 성적 폭력 성적 접촉	언어적 요구 성적 뇌물 성적 위협
법적 구분	적대적 환경형 괴롭힘	고용조건형 괴롭힘	

압력/접근이 포함된다. 또한 언어적 언급은 언어적 요구와 달리 관계 지향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언급의 목적은 성적 관심의 표현부터 여성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려는 의도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은 신체적 행동(예, 성폭행이나 성적 접촉), 성적 자세(예, 신체 언어나 저속한 몸짓), 그리고 성적 자료(예, 포르노 그라피)를 여성에게 보여주거나 혹은 볼 수 있는 자리에 공공연하게 부쳐 놓는 것 등의 행위를 말한다.

한편, Fitzgerald, Gelfand, 그리고 Drasgow (1995)는 서로 관련되지만 개념적으로 뚜렷이 구별되는 3개의 차원을 제안했다. 첫째, 성별괴롭힘(gender harassment)은 Till의 첫째 유목과 유사하게, 성적 협조를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모욕적이고 적대적이며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를 가진 언어적, 신체적 행동, 그리고 상징적인 동작 등을 포함하는 유목이다. 둘째, 원치 않는 성적 주목(unwanted sexual attention)은 환영받지 않는, 불쾌하고, 비상호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 셋째, 성적 강제(sexual coercion)는 성적 괴롭힘의 전형적인 예로, 직업과 관련된 고려의 대가로 성적 협조를 강요하는 것이다. Fitzgerald 등은 다양한 표본과 장면에서 수집한 조사 연구에 기초해 이 모델을 제안했는데, 그들은 일련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유목이 성적 괴롭힘 행동의 구성 차원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 유목을 법적 구성

요인과 상응시키고, 성적 강제는 고용조건형 성적 괴롭힘에, 성별 괴롭힘과 원치 않는 성적 주목은 적대적 작업 환경형 성적 괴롭힘에 각각 해당된다고 밝혔다.

위에서 제시된 3개의 모델을 비교해 보면, Fitzgerald 등의 3차원 모델은 Till의 체계에 비해 뇌물과 위협간의 구분을 하지 않고 있어 더 경계적이고, Gruber 체계와는 달리 고용조건형 괴롭힘과 적대적 환경 행동간의 법적 구별이 혼합되어 있지 않으며 유목이 어느 정도 상호 배타적이다. 반면 Gruber의 체계는 낮은 일반화 수준에서 구체적이라는 강점을 가진다. 우리나라와 같이 성적 괴롭힘의 구성 차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는, Gruber 체계와 같이 구체적인 수준의 하위 유목이 보다 상위 수준의 접근에 비해 우선적으로 이점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 볼 때 성적 괴롭힘의 구성 개념을 밝히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본 원칙은 하위 수준의 유목 기준을 충족시켜 개념의 구성 요소 중 어떠한 부분도 무시되지 않도록 하되, 그들 행동이 Fitzgerald 등의 체계와 같이 보다 경계적인 체계 속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Gruber의 하위 유목을 Fitzgerald 등의 모델 내에서 새 체계화한 분류를, 내용 타당도가 있는 성적 괴롭힘의 조사 도구를 개발하는데 이론적 틀로 사용하였다(표 1 참조).

2. 성적 괴롭힘의 구성 차원을 밝히기 위한 심리 측정적인 고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적 괴롭힘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들은 크게 시나리오 타입의 유추 연구, 피해 여성과의 심층 면접 연구, 그리고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연구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구체적 연구 문제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식의 연구가 설계되어야 하며, 위의 세 가지 연구 방법은 각기 장단점을 가진다. 먼저, 시나리오 연구는 성적 괴롭힘 행동과 관련되는 전후 맥락이나 상황을 제공하고 관심 있는 변인을 시나리오 내에서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적 괴롭힘에 대한 인과적 모델을 검증하기에 적당하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성적 괴롭힘의 개념적 구조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보여주기에는 부적절하고, 연구 결과의 생태학적 타당도에 있어 상당한 제한점을 가진다.

심층 면접법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개인의 지각이 성적 괴롭힘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유용하다. 그러나 이러한 질적 연구법은 상담 사례나 법정 소송 등에서 문제화된 행동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직장 내 이성관계에서 어떠한 행동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데 적절하지 못하고, 소수의 사례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문제를 지닌다.

조사 연구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고 사전에 잘 설계된 척도가 사용될 때, 성적 괴롭힘의 개념적 구조를 밝히고 발생 정도와 전체적인 윤곽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는 신뢰도나 타당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해당 연구를 위해 즉각적으로 개발된 간단한 체크리스트에 의지해 왔다(Fitzgerald, Swan, & Magley, 1997).

이 분야의 조사 연구 중 대표적인 두 연구를 비교해 보면, Merit System(1981; 1987) 연구의 경우, 응답자들에게 7가지 유형의 성적 괴롭힘 행동에 대한 간단한 리스트를 제시하고, “전혀 그런 적이 없다”에서부터 “일주일에 한 번 또는 그 이상”에 이르는 5점 척도에서 지난

24개월 동안 각 행동에 대한 자신의 경험의 빈도를 기술하게 하였다. 문항은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되었고, 신뢰도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Gutek(1985)은 응답자에게 칭찬을 의미하는 성적 언사와 모욕이 되는 성적 언사, 칭찬을 의미하는 시선이나 몸짓과 모욕이 되는 것, 비성적인 접촉과 성적인 접촉, 직무의 일부로서 사교적이기를 요구받는 것, 그리고 직무의 일부로서 성적인 활동에 용하기를 요구받는 것을 물어보았다. 응답자들은 그러한 행동이 현재의 직장이나 이전의 직장에서 일어 났는지의 여부를 예/아니오의 형태로 답하였다.

이 두 연구는 성적 괴롭힘의 구성개념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나 분류 근거 없이 각기 다른 측면을 측정하고 있고, 신뢰도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응답 방식에서도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 결과가 비교, 축적되지 못한 점을 잘 예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Fitzgerald, Shullman, Bailey, Richards, Swecker, Gold, Ormerod, 그리고 Weitzman (1988)은 Till의 연구에 기초해 신뢰도와 타당도의 전통적인 심리측정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성적 경험 설문지 (Sexual Experiences Questionnaire: SEQ)’라는 도구를 제작하였다. 모든 문항은 행동적인 용어로 써어졌고, “당신은 과 같은 상황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라는 형태의 질문을 제시했다. 초판 SEQ는 3점 척도(전혀, 한 번, 한 번 이상)를 사용하였고, 개정판 SEQ에서는 5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의 신뢰도(alpha coefficients, corrected split - half coefficients)와 2주 간격의 안정성 계수는 평균 .86이었다. Till의 유목에서 나온 분류에 근거하여 문항을 제작하였으므로 SEQ의 내용타당도는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SEQ는 신뢰도나 타당도와 같은 심리측정적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성적 괴롭힘 연구 분야에서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피험자 중에 남성이 포함될 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 도구는 한계를 가진다. SEQ의 문항들이 대체로 행동 중심적으로 기술되었다고는 하지만, ‘짓궂은 농담’이나 ‘불쾌한 질문’ 등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러한 기술은 여성 응답자에게는 적절한 답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남성 응답자에게는 해석상의 차이를 유발하여 행동의 발생 정도에 대해 과소추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성적 괴롭힘의 구성 차원을 밝히고 이에 대한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Fitzgerald 등(1988)의 SEQ처럼 신뢰도와 타당도의 기준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가치 중립적인 문항들로 구성된 척도를 제작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실시할 수 있는, 심리 측정 면에서 타당하고 신뢰로운 자기 보고식 성적 괴롭힘 설문지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장 내 이성 관계에서 남녀가 함께 동의하는 성적 괴롭힘 행동들을 밝힘으로써 “성적 괴롭힘”的 심리학적 구성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¹⁾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대기업 S, D, H사의 일반 사무직에 근무하는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처음에 남성용 700부, 여성용 3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나, 남성용 설문지는 550부(회수율 78.5%), 여성용 설문지는 210부(회수율 70%)가 회수되었다. 이를 가운데 일부 질문에만 응답한 설문지와 특이한 반응 패턴(예, 모든 질문에 4라고 응답)이 발견된 설문지 85부(남성용 40부, 여성용 45부), 그리고 본 연구에 부합되지 않는 직무에서 일하는 것으로 판단된 응답자(영업직 근무자, 회계사나 변리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의 설문지 25부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1) 본 연구에서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괴롭힘만을 다룰 것이다. 물론 남성에 대한 여성의 성적 괴롭힘이나 동성간 성적 괴롭힘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유형의 성적 괴롭힘의 발생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원인에 대한 이해도 별도의 차원에서 시도되어야 할 문제라고 고려되는 바, 본 연구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적 괴롭힘 행동의 유형과 만연 정도가 직업의 유형이나 조직 풍토에 따라 다를 것이라 예측되는 바(Fiske & Glick, 1995), 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직종을 일반 사무직으로 통제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 대상자의 수는 총 650명이었다.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적 변인은 남성이 74.6%, 여성이 25.4%로 남성이 훨씬 많았고, 평균 연령은 만 30.5세였다. 학력은 대졸자가 전체 응답자의 49.5%를 차지하였고, 직위는 일반사원이 52.7%, 대리와과장급은 각각 25%, 19.6%였으며 부장급 이상은 2.8%에 불과했다. 결혼여부는 미혼 47.1%, 기혼 52.9%였고, 기혼자의 평균자녀수는 0.7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성적 괴롭힘의 구성 차원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 모델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델 설정 과정에 표본의 특수성이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우선 모델 설정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에는 전체 응답자의 자료를 모두 포함시켰고, 이 모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교차 타당화 분석에는 전체 응답자를 이분하여, 한 집단(N=324)은 확인적 요인분석에, 다른 집단(N=326)은 설정된 모델에 대한 교차 타당화 분석에 각각 이용하였다.

2. 절차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지는 각 사 담당 부서와의 협의 하에 근무 중의 사원들에게 배부하고 일주일에 걸쳐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개인별로 봉투에 넣어서 배부되었고, 응답자는 본 설문에 들어가기 전에 설문의 내용과 의명성 보장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읽도록 했다. 설문지의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이었으며, 응답을 마치면 연구에 대한 피드백 정보를 읽게 하였다. 완성한 설문지는 다시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사무실 앞에 위치한 빙 상자에 개인별로 넣게 하였다. 봉투의 겉면에는 응답자의 소속 부서나 이름 등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3.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직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성적 괴롭힘 행동의 구성차원을 밝히고 그 발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 보고식 성적 괴롭힘 척도를 제작하였다. 우선, 앞서 제시한 외국의 선행 조사 연구와, 성적 괴롭힘 사례의 판결문이나 성적 괴롭힘의 법적 개념이 제시된 지침, 그리고 성적 괴롭힘 피해자들의 보고 등을 함께 고려하여, 43개의 문항이 제작되었다. 각 문항은, 내용 타당도를 위해 Gruber의 하위 유목을 Fitzgerald 등의 모델 내에서 재체계화한 것을 이론적 틀로 사용하고(표 1 참고), 성적 괴롭힘의 하위 유목별로 복수 문항을 제작하였다. 모든 문항은 해석상의 문제가 없도록 행동적인 용어로 기술되었고, 사회적 바람직성 기준에 의해 가능한 한 영향을 덜 받도록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 기술하였다. 예를 들면, '짓궂은 성적 농담이나 불쾌한 질문'은 '여성의 성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여성의 신체치수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 등으로 기술하였다. 한편, 가치 중립적인 표현으로 문항 내용이 애매해지거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에 대해서는 그 행동의 예를 제시함으로써 질문의 내용을 구체화시켰다. 예를 들어, '성차별적인 언사'를 물어보는 문항은 '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로 기술하고, "여자가 무슨...", "우리에겐 남자 상관이 필요해" 등과 같은 예를 함께 제시하였다. 성적 괴롭힘 개념에 대한 피험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성적 괴롭힘'이라는 단어는 설문지 전체를 통해 사용되지 않았다. 단 설문지를 모두 마친 피험자에게 연구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본 연구가 성적 괴롭힘에 관련된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문항은 행동의 심각성의 정도가 덜한 것부터 심한 것 순으로 배열하였다.

모든 문항은 "직장에서, 나는 ..." 이라는 문구로 시작되며 표현함으로써(남성용의 경우), 응답자가 문항에 기술된 행동이 직장 장면에서 일어나는 경우로 한정시켜 판단하도록 행동의 맥락을 제한시켰다.

성적 괴롭힘의 구성 차원을 보다 잘 이해하고, 성적

괴롭힘에 대한 여성의 보고를 남성의 보고와 비교할 목적으로, 여성용 성적 괴롭힘 척도를 제작하였다. 여성용 성적 괴롭힘 척도는 남성용과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되, 단 문항의 기술 방식을 "직장에서 남성 상사나 동료가 ..."와 같이 여성 응답자에게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1) 문항의 예비적 검토

초기 문항은 영어로 제작되었고, 제작된 43문항에 대해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의 심리학과 대학원생 12명과 심리학과 교수 3인이 문항 표현에 대한 거부감, 내용의 명확성, 문항 간의 변별력 등의 차원에서 문항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설문의 응답자가 문항을 읽을 때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지적된 일부 문항이 수정되었고, 행동의 심각성 정도가 심해서 피험자의 거부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된 일부 문항과 문항간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진 11개의 문항이 제거되어 최종적으로 32 문항이 선정되었다.

또한, 내용 타당도의 검증을 위해 대학원생 12명에게 성적 괴롭힘의 하위 유목을 제공하고 각 문항들이 성적 괴롭힘의 어느 하위 유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게 했다. 이때 제공된 성적 괴롭힘의 하위 유목은 표 1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2) 한국어 번안

영어로 제작된 성적 괴롭힘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이중국어 사용자에게 역번역을 실시하여 동일한 내용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후, 한국어로 표현된 32 문항에 대해 직장 남성 5인과 심리학 전공자 4인에게 문항 표현의 적절성과 명료성을 검토받았다. 지적된 문항에 대해서는 설문 문항의 표현을 다시 평이하면서도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문장으로 수정 작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척도상에서 자신의 경험을 가장 잘 나타내는 값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1 = 한 번도 없다, 2 = 한 번, 3 = 두 번, 4 = 가끔, 5 = 자주).

4. 분석

본 연구 문제에 대한 분석은 크게 3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수집, 제작된 문항에 대한 평정 자료를 가지고 요인 분석과 문항 분석을 실시하고, 모델 개발에 사용할 문항을 간추려내었다. 둘째,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위한 모델을 설정했고 수집된 자료의 반으로 이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수행했다. 모델의 일부가 수정되고 자료와 모델의 부합도가 높은 모델을 결정했다. 셋째, 수집된 자료의 나머지 반을 가지고 수정된 모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델의 타당도를 검증했다. 또한 각 척도별로 Cronbach(1951)의 α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결과 및 해석

1. 탐색적 요인분석

성적 괴롭힘의 구성 개념을 알아보고자, 성적 괴롭힘 척도 32문항에 대해 공통요인분석법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통변량(communalities)의 초기값은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중다상관자승치)로 하였고, 요인 구조는 Varimax방식으로 직각 회전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기초 요인 분석 결과 요인별 고유치, 설명변량 퍼센트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요인의 설명 변량 비율과 Scree 검사를 기준으로 요인의 수는 3개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각 구성 개념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선정하기 위하-

여, 요인 계수가 .30이하이거나 어느 요인에도 속하지 않는 문항, 혹은 해석이 어려운 문항을 제외시켰다. 이러한 문항 줄이기로 나타난 각 요인의 문항수는 요인 I 9 문항, 요인 II 7 문항, 요인 III 6 문항으로, 총 22 문항의 성적 괴롭힘 문항이 선택되었다. 이들 문항에 대해 요인의 개수를 3으로 지정하고(NFACT=3) 다시 요인 구조를 산출하였는데,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문항과 요인 구조에 대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요인 구조에서 요인 I은 언어형 성적 괴롭힘으로, 요인 II는 관계요구형 성적 괴롭힘으로, 그리고 요인 III은 신체/환경형 성적 괴롭힘으로 명명할 수 있다. 각 요인의 설명 변량을 살펴보면, 성적 괴롭힘에서 언어형 괴롭힘이 가장 큰 변량(39.9%)을 설명하고 있고, 다음이 관계요구형(33.2%), 신체/환경형(26.9%) 괴롭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별 문항수, 신뢰도, 그리고 평균 및 표준 오차를 표 4에서 요약하였다.

표 5에서는 각각 회전으로 산출된 요인 구조에서 나타난 요인간 상관 계수를 제시하였다. 각각 회전으로 산출된 요인 구조에서 성적 괴롭힘의 구성 요인간에 유의한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후 확인적 요인 분석과 교차 타당화 단계에서는 요인간 상호 상관이 존재하는 모델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2. 확인적 요인 분석

성적 괴롭힘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은, 1차 요인 분석을 통해 선별된 22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의 3요인 해(solution)를 초기 모델로 실시되었다. 총 650명의 자료중 324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22개의 측정변수들이 세 요인을 잘 나타내는지

표 2 성적 괴롭힘의 요인 분석 결과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전체	평균고유치
고유치	6.134	2.029	0.910	0.424	0.379	9.275	0.422
설명변량비율	0.661	0.219	0.098	0.046	0.041		
누적설명변량	0.661	0.880	0.978	1.024	1.065		

표 3 직각 회전 방식으로 산출한 성적 괴롭힘의 요인 구조

문항#	문 항 내 용	요인1	요인2	요인3	h^2
06	어떤 여성에게 여성의 성에 대해 농담한 적이 있다	0.776	0.136	0.070	0.626
07	어떤 여성에게 여성의 신체에 대해 농담한 적이 있다	0.728	0.151	0.155	0.421
05	여성의 신체치수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	0.620	0.101	0.162	0.421
02	여성의 신체에 대해 다른 여성과 이야기한 적이 있다	0.611	-0.027	0.135	0.392
04	어떤 여성에 성적인 면에서 얼마나 매력적인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0.540	0.056	0.236	0.351
10	여성의 외모에 대해 놀린 적이 있다	0.539	0.205	0.111	0.345
12	여성의 성적인 신체구조에 대해 다른 여성들과 이야기한 적이 있다	0.517	0.218	0.078	0.321
01	어떤 여성의 사생활을 적어도 한 명의 여성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남성 동료와 이야기한 적이 있다	0.484	0.102	0.039	0.246
18	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0.313	0.308	0.113	0.205
21	어떤 여성에게 성적인 면에서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유익한 대가를 얻을 수도 있다고 암시한 적이 있다	0.143	0.812	0.107	0.691
22	어떤 여성에게 성적인 면에서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대우를 제대로 못받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 적이 있다	0.101	0.769	0.106	0.612
29	어떤 여성이나의 교제 제의를 거절했을 때,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여성에게 원가 부정적인 결과가 가도록 일을 처리한 적이 있다	0.032	0.684	0.360	0.598
13	내가 사랑을 느낀 여성이나 처음에 나의 호의를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성적 친밀감이나 성적인 욕망에 대해 반복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0.258	0.449	0.262	0.304
25	내가 친해지려고 다가가는 것을 거절하는 여성에게 다소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한 적이 있다	0.165	0.427	0.307	0.304
19	어떤 여성과 그녀의 성적인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예, “유부남과 데이트해 본 적 있어요?”, “성경험 있어요?”)	0.315	0.393	0.234	0.309
20	성과 관련된 나의 욕망을 표현하는 이야기를, 어떤 여성이나 들을 수 있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예, “오늘밤은 --와 함께 지내고 싶은 기분이야.”)	0.228	0.388	0.343	0.320
28	어떤 여성에게 성적인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그 뒤에 바짝 다가선 적이 있다	-0.017	0.307	0.720	0.613
30	어떤 여성이나 불편하다는 느낌을 나타내지만 명백하게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예, 컴퓨터 작업 중인 여직원의 손을 잡거나 어깨에 팔을 올려놓기)	0.256	0.076	0.620	0.456
31	어떤 여성이나 원치 않을 때, 신체 일부를 다정하게 만지려고 한 적이 있다(예, 영덩이를 가볍게 톡 치기)	0.156	0.297	0.551	0.417
32	어떤 여성이나 원치 않을 때, 입맞춤이나 애무를 한 적이 있다	0.003	0.394	0.495	0.401
23	여성들이 볼 수도 있는 자리에 야한 그림이나 잡지, 또는 음란 비디오 등을 둔 적이 있다	0.301	0.087	0.430	0.283
03	내가 사랑을 느낀 여성이나 처음에 나의 호의를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한 적이 있다	0.326	0.149	0.399	0.288
고유치		3.635	3.031	2.447	9.113
설명변량(%)		39.9	33.2	26.	
누적설명변량		39.9	73.1	100.0	
신뢰도 α		0.836	0.826	0.762	

표 4 성적 괴롭힘 요인에 대한 문항수, 신뢰도, 평균 및 표준오차

구성개념	문항수	신뢰도(α)	평균	표준오차	사례수
언어형	9	.836	2.27	0.88	650
관계요구형	7	.826	1.32	0.54	650
신체/환경형	6	.762	1.43	0.61	650

표 5 각각 회전으로 산출된 성적 괴롭힘 요인간 상관 계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언어형	관계요구형	신체/환경형
요인 1	1.00		
요인 2	0.46 ***	1.00	
요인 3	0.47 ***	0.58 ***	1.00

*** p<.001

알아보기 위하여 각 문항은 해당 요인에만 부하 되도록 했으며 잔차들 간에는 모두 상관이 없고 세 요인들 간에 상호상관이 존재하는 모델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UL(Unweighted Least Square)법을 사용하였고, 분석 자료는 상관 행렬이 이용되었다.

성적 괴롭힘의 요인 구조 검증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부합지수들이 표 6에 제시되었다. UL법에 의한 계산 방식에서는 카이자승치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변량 정규분포의 위반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기초부합치(GFI), 조정부합치(AGFI), 표준부합치(NFI), 원소간 평균차이(RMR)를 가지고 모델이 경험적 자료에 잘 맞는지를 검토하였다. 표 6에서 보듯이 전반적인 부합 지수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부합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90 (Bantler & Bonett, 1980)을 훨씬 넘는 수치를 보임으로써 부합의 준거를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표 7에는 성적 괴롭힘의 검증 모델에 대한 표준화된 요인계수의 LISREL 추정치가 제시되었는데, 이 값들은 각 요인에 대해 높은 요인 부하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적 괴롭힘 척도 개발 단계에서 탐색적

표 6 모델에 대한 부합도 지수들

모형	GFI	AGFI	NFI	RMR
검증 모델	.96	.95	.94	.0070

요인 분석의 결과로 얻어진 성적 괴롭힘에 대한 3 요인 구조는 타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교차 타당화

앞서 일련의 요인 분석 과정을 거쳐 결정된 성적 괴롭힘의 구성 개념에 대한 모델이, 모델 검증과정에서 사용된 자료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얻어진 결과인지 아니면 다른 표본에도 일반화될 수 있는 모델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교차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성적 괴롭힘의 구성 요인 모델을 교차 타당화하는데는, 확인적 요인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던 326명의 응답 자료를 대상으로 앞서 실시한 확인적 요인 분석과 동

표 7 모델에 대한 LISREL 요인계수 추정치

	요인 1: 언어형	요인 2: 관계요구형	요인 3: 신체/환경형	SMC
H06	0.73 (25.62)	--	--	0.54
H07	0.75 (26.32)	--	--	0.57
H05	0.64 (23.18)	--	--	0.41
H02	0.54 (19.76)	--	--	0.29
H04	0.59 (21.54)	--	--	0.35
H10	0.61 (22.54)	--	--	0.37
H12	0.58 (21.32)	--	--	0.34
H01	0.47 (17.44)	--	--	0.22
H18	0.48 (18.02)	--	--	0.23
H21	--	0.69 (24.72)	--	0.47
H22	--	0.63 (23.06)	--	0.40
H29	--	0.69 (24.92)	--	0.48
H13	--	0.62 (23.42)	--	0.39
H25	--	0.58 (21.71)	--	0.33
H19	--	0.60 (22.67)	--	0.36
H20	--	0.61 (23.15)	--	0.38
H28	--	--	0.64 (21.81)	0.42
H30	--	--	0.61 (21.63)	0.38
H31	--	--	0.67 (23.02)	0.44
H32	--	--	0.59 (20.30)	0.34
H23	--	--	0.53 (19.07)	0.28
H03	--	--	0.57 (20.34)	0.33

주) 팔호 안은 고정지수(T-value)

표 8 모델에 대한 타당화 검증에서의 부합도 지수들

모 형	GFI	AGFI	NFI	RMR
검증 모델	.96	.96	.94	.0067

일한 절차와 검증 방식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표 8, 표 9에 성적 괴롭힘의 모델에 대한 타당화 검증에서의 전반적인 부합지수와 표준화된 요인 계수의 LISREL 추정치가 제시되었다.

표 8에서 보듯이 일련의 요인 분석을 통해 제안된 성적 괴롭힘의 요인 구조가 표본을 달리하여 검증될 때도 전반적인 부합 지수들이 양호하게 유지되었다. 또한

표 9에서 보듯이 성적 괴롭힘의 모델에 대한 표준화된 요인계수의 LISREL 추정치에서, 각 요인에 대한 요인 부하량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성적 괴롭힘에 대한 3 요인 모델은 일반 사무직에서 일어나는 성적 괴롭힘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적 괴롭힘의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성적 괴롭힘의 구성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와 현장 자료 수집을 통해 이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표 9. 모델에 대한 타당화 검증에서의 LISREL 요인계수 추정치

	요인 1: 언어형	요인 2: 관계요구형	요인 3: 신체/환경형	SMC
H06	0.74 (26.38)	- -	- -	0.55
H07	0.73 (25.90)	- -	- -	0.53
H05	0.59 (21.87)	- -	- -	0.35
H02	0.70 (25.17)	- -	- -	0.49
H04	0.59 (21.84)	- -	- -	0.34
H10	0.54 (20.24)	- -	- -	0.29
H12	0.57 (21.24)	- -	- -	0.32
H01	0.53 (20.07)	- -	- -	0.29
H18	0.48 (18.23)	- -	- -	0.23
H21	- -	0.70 (25.22)	- -	0.49
H22	- -	0.65 (23.39)	- -	0.42
H29	- -	0.70 (25.16)	- -	0.49
H13	- -	0.54 (20.71)	- -	0.30
H25	- -	0.55 (20.97)	- -	0.30
H19	- -	0.73 (26.69)	- -	0.53
H20	- -	0.65 (24.54)	- -	0.42
H30	- -	- -	0.71(25.17)	0.51
H30	- -	- -	0.60(22.08)	0.36
H31	- -	- -	0.70(24.78)	0.49
H32	- -	- -	0.62(22.10)	0.38
H23	- -	- -	0.45(16.99)	0.20
H03	- -	- -	0.45(17.48)	0.21

주) 괄호 안은 고정지수(T-value)

들이 제작되었고, 기술된 문항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 그리고 요인 분석 결과 제안된 모델에 대해 교차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적 괴롭힘은 언어형 성적 괴롭힘, 관계요구형 성적 괴롭힘, 신체/환경형 성적 괴롭힘이 주요 구성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언어형 괴롭힘은 여성의 신체나 성, 개인적 사생활에 대한 농담이나 놀림, 그리고 성차별적인 언급 등을 나타낸다. 둘째, 관계요구형 괴롭힘은 여성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상대 여성의 그러한 요구에 응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어떤 형태의 불이익이나 보상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진다. 셋째, 신체/환경형 괴롭힘은 직장에서 여성의 싫어하고 불쾌하게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과 야한 그림이나 잡지, 또는 음란 비디오 등을 여성의 볼 수 있는 자리에

두는 등의 행위이다.

언어형 괴롭힘은, Gruber(1992)가 언어적 언급(verbal remark)으로 명명한 요인과 유사하다. Fitzgerald 등(1988)은 이 요인을 성별 괴롭힘(gender harassment)에 포함시켰으나, 성별 괴롭힘에는 언어적 요인 뿐 아니라 상징적인 동작과 같은 신체적 요인과 음란 사진의 전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형 괴롭힘과 신체/환경형 괴롭힘이 뚜렷이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관계요구형 괴롭힘은 Fitzgerald 등의 성적 강요(sexual coercion)나 Gruber의 언어적 요구(verbal request)와 거의 일치되는 요인이었다. 한편 신체/환경형 괴롭힘은 Gruber가 비언어적 전시(nonverbal display)라고 명명한 요인과 유사하고, 비상호적이라는 점에서 Fitzgerald 등의 원치 않는 성적 주목(unwanted sexual attention)과 공통점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언어적이고 일방향적인 성적 괴롭힘이라는 점에서 다른 요인과 구분된다.

정리해 보면, 본 연구에서 밝혀진 성적 괴롭힘의 구성 요인은 이전의 모델과 비교해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 Till(1980)이 제시한 5 요인 모델에 비해서는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의 3 요인 모델이 보다 경제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Fitzgerald 등(1988)의 3 요인 모델과 요인의 개념적 특성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일치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형태와 신체/환경형 형태가 뚜렷이 다른 요소로 구분되었다는 점에서 Fitzgerald 등의 모델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남성의 경험이 분석에 포함된 반면 Fitzgerald 등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험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로부터, Gruber가 제안한 성적 괴롭힘의 분류 체계에서 11개 하위 수준의 분류보다 3개 유형의 상위 수준의 분류가 경험적으로 더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밝혀진 성적 괴롭힘의 3 요인 구조는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높은 구성개념 타당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교차 타당화 분석을 통해서 일반 사무직의 성적 괴롭힘을 설명하는 모델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내 이성관계에서 무엇이 성적 괴롭힘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서, 개인적 측면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성적 괴롭힘이 될 수 있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직장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조직적 측면에서는 직장의 근무 환경을 진단하는데 이용하여 조직 내 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189, 9조 1항, 1999)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각 기업체들은 무엇을 성적 괴롭힘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지침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가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이러한 조직적 차원의 노력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성적 괴롭힘과 관련된 문제들을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실시 할 수 있는 심리 측정 면에서 타당하고 신뢰로운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제작하여 이 문제에 대한 일반 남성과 여성의 인식을 함께 읽어내고자 하였다. 이를 기초로 이후에 성적 괴롭힘 현상과 관련된 많은 심리학적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의 성적 괴롭힘을 지각함에 있어서 어떤 영역에서 어떠한 차 이를 나타내는지, 혹은 성적 괴롭힘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혹은 조직적 요인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노력이 특정한 부분의 과장이나 축소 없이 성적 괴롭힘 현상을 그대로 투영해 줌으로써, 성적 괴롭힘의 문제를 걸고 럽고 끝치 아픈 문제로서 들키내기보다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해 개인과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게 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16189호 (1999. 3. 17 개정)
- 서울민사지방법원(1994.4). 93가합77840 손해배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1995.7). 94나15358 손해배상 판결.
- 신성자(1993).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적 성가심의 유형,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피해 여성의 개인적 상황적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 5집, 사회과학연구소.
- 심영희(1989). 성폭력의 실태와 법적 통제. 한국여성학, 제 5집, 한국여성학회.
- 조정아, 조혜순(1991). 직장에서의 성적 폭력. 또하나의 문학: 새로쓰는 성이야기, 8호, 서울: 또하나의 문학
- Ba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 88, 588-606.
- Fiske, S. T. & Glick, P. (1995). Ambivalence and stereotypes cause sexual harassment: A Theory with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change. *Journal of Social Issues*, 51, 97 -116
- Fitzgerald, L. F., Swan, S., & Magley, V.(1997). But was it really sexual harassment?: Legal,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definitions of the workplace victimization of women. In W. O'Donohue(Ed.), *Sexual harassment: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Fitzgerald, L. F., Gelfand M. J., & Drasgow F. (1995). Measuring sexual harassment: Theoretical and Psychometric Advance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7(4), 425-445.
- Fitzgerald, L. F., & Hensson-McInnis, M. (1989). The dimensions of sexual harassment: A structural analysi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309-326.
- Fitzgerald, L. F., Shullman, S. L., Bailey, N., Richards, M., Swecker, J., Gold, Y., Ormerod, A. J., & Weitzman, L. (1988). The Incidence and dimensions of sexual harassment in academia and the workpla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 152-175.
- Gruber, J. E. (1992). A typology of personal and environmental sexual harassment: Research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1990s. *Sex roles*, 26(11/12), 447-464.
- Gutek, B. A. (1985). *Sex and the workplace*. San Francisco: Jossey-Bass.
- Till, F. J.(1980). *Sexual harassment: A report on the sexual harassment of students*. Washington, DC: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Women's Educational Program.
- U. S.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1987). *Sexual harassment of federal workers: Is it a problem?: An update*.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U. S.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1981). *Sexual harassment of federal workers: Is it a problem?*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A Dimension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HYUN-JEONG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 Ewha Womans University

Despite the growing attention devoted to the topic of sexual harassment among lay people, little psychological study has emerged due to the lack of a commonly accepted definition and a reliable and valid instrumentation that could provide comparable results across studies. The present study was intend to identify the dimension of sexual harassment, surveying 485 men and 165 women working in major companies in Seoul, Korea. It was found that sexual harassment i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verbal harassment, relation-request harassment, and physical/environmental harassment.